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공 청사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조사 등 >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113호)

2025.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공공 청사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조사 등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호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25.
3. 회 부 일 : 2025. 4.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촬영 범죄가 일어난 이후, 특히 해당 영상이 유포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에서는 불법촬영 행위가 발생한 이후, 비로소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등 사후 조치를 할 수 있음.

이에 일반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사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카메라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공공기관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공공 청사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조사 등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대 시설 및 그 대지(이하 “청사”라 함) 내에 불법카메라의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청사에서 불법카메라 또는 불법촬영물 등을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9조의2(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조사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대 시설 및 그 대지(이하 “청사”라 한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이하 이 조에서 “불법카메라”라 한다)의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사에서 불법카메라 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을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¹⁾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²⁾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삭제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2023년의 경우 6,626건으로 2021년 이후 매년 6천건 이상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피해자 연령(2021년 기준)을 보면, 20~30대가 전체 피해자의 48%(20대 36.5%, 30대 11.5%)를 차지하고 있음.³⁾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3)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피해자 연령 >

(단위: 명, %)

<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 현황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5,925건	5,762건	5,032건	6,212건	6,865건	6,626건

자료: 2023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공중화장실이나 상업건물 등, 대중교통 등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음(48.7%).⁴⁾ 성인의 경우 불법촬영은 공중화장실·탈의실·기숙사·숙박시설·사무실 책상 아래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⁵⁾

한편,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보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이라 함)⁶⁾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리 확인

10세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미상	총계
14	1,777	5,780	1,831	919	408	65	7	5,053	15,854
0.1	11.2	36.5	11.5	5.8	2.6	0.4	0.0	31.9	100

자료: 2023 성범죄백서, 법무부

주 1: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전원의 신상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

4) < 아동·청소년 대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 발생 장소(오프라인) > (단위: 건, %)

집, 주택가 등	학교	주차장	상업 건물 등	야외, 거리	대중 교통	공중 화장실	학원 및 보육시설	기타	총계
38	26	3	43	31	40	55	4	43	283
13.4	9.2	1.1	15.2	11.0	14.1	19.4	1.4	15.2	100

자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 분석, 여성가족부(2024)

주 1: 2023년 한 해 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최종심에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1,436명의 판결문(범행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을 분석하여 집계한 것임.

5) 뉴시스, “대대적인 단속에도 성과 無…물카 범죄 많은 곳 살펴보니”, 2023.04.0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30404_0002252877) 게시물 최종확인일자: 2025.06.04.

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을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면서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중위생관리법」 7)은 숙박업·목욕장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영

-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 17. : 자연공원,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도시공원, 휴게시설(「도로법」), 철도시설 중 역시설,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유선장 및 도선장,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체육시설, 공항시설, 공연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 제12조(시설 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营业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소에 제5조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중위생영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숙박업(이하 “관광숙박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위생관리상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업소에 불법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설치를 금지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기계장치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숙박시설이나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숙박업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은 주로 교육훈련시설 또는 연수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어 숙박업에서 제외되어 있음.⁸⁾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을 통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된다는 점에서 범죄 발생 전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에 개정안은 공중화장실등 및 공중위생업소 외에도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 8) 숙박업은 영업(營業)에 해당하므로 영리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숙박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러한 숙박시설의 경우 교육훈련 등 특정목적에 위해 부수적으로 숙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보건복지부, 「2025년 공중위생관리 사업 안내」(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지침), 12-13면.

체에게 청사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불법촬영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봄.

다만, 개정안은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는 대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로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조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은 「공중화장실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기점검 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규정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시설물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불법촬영물등을 발견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제2210115호)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조사대상을 점검 필요성이 있는 시설 등으로 구체화하고, 조사 주체도 명확히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입장임. 다만, 현행법령의 체계상 공중화장실, 숙박업소 등 시설 내 불법카메라 점검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계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관한 사항 역시 관계 법률의 소관 부처에서 도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행정안전부는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청사의 경우 불법카메라 단속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⁹⁾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650

9) 예를 들어, 정부청사의 공용공간(여성화장실, 공용회의실 등)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관리 주체가 되고, 입주기관에서 사용하는 사무공간(기관장실, 사무실, 휴게실, 당직실 등)은 해당 기관이 관리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